

의안번호	2219724
의 퇴 인	배준영 의원
회 답 일	2026.7.9.
추 계 번호	26E3234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공제대상에 반려동물의료
지출분 추가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의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26조의2제2항 (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)	○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공제대상에 동물병원 에서 반려동물에 대하여 동물의료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(반려동물의료지출분) 추가 - (공제율) 30% - (공제한도) · (기본) 300만원(총급여 7천 초과 시 250만원) · (추가) ‘도서 등’*, ‘전통시장’ ‘대중교통’ 사용분 300만 원 추가(총급여 7천 초과시 200만원) * (도서 등) 도서·신문·공연사용분+박물관·미술관·영화 상영관사용분+ <u>스포츠관람 사용분</u>	조세 지출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26조의2제2항 (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공제대상 항목에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에 대하여 동물의료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(이하 “반려동물의료지출분”이라 함)을 추가해 해당 지출분에 대해 30%의 소득공제를 적용하려는 것으로,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

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개요, 2026년 기준

제도	항목	공제제도
소득공제율	· 신용카드	15%
	· 현금영수증, 직불·선불카드	30%
	· 도서·신문·공연·박물관·미술관·영화 관람료·체육시설사용분(문화체육사용 분)	30%
	· 전통시장 사용분	40%
	· 대중교통 사용분	40%
소득공제 한도	· 총급여 7천만원 이하	300만원 (자녀 1명 350만원, 2명 이상 400만원)
	· 총급여 7천만원 초과	250만원 (자녀 1명 275만원, 2명 이상 300만원)
	· 문화체육, 전통시장, 대중교통 사용분	300만원 추가*
		(*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시 200만원)
일몰 기한	2028.12.31.	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려면 근로소득자 중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 지출인원, 해당 인원의 총급여액 및 신용카드 사용액,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나, 해당 자료의 습득에 어려움이 있어 객관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

-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항목 추가에 따른 소득공제금액의 변화는 개인의 소득규모별 기본공제 한도, 기본공제 한도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금액, 기본공제 한도 초과 사용분 중 추가공제 가능 금액(한도 초과분과 대중교통·전통시장 및 문화체육사용분 등 공제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)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려면 개인별 총급여액, 공제항목별 신용카드 등 사용분,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등에 대한 자료 필요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신홍철	박연서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신홍철	02-6788-4745	hongfe@assembly.go.kr